

등록대행자간 도메인 이전에 관한 정책 | 2015년 1월 31일 시행

Policy on Transfer of Registrations between Registrars | Takes effect 31 January 2015

2011년 8월 25일 개정안 채택

2015년 1월 31일 시행

A. 보유자가 승인한 이전

1. 등록대행자 요건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는 반드시 한 등록대행자에서 다른 등록대행자로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전대상 등록대행자(Gaining Registrar)의 이전 절차가 본 정책의 최소 기준에 부합하고 그러한 이전이 ICANN 이나 관리기관 정책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등록대행자간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간소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행자들은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에게 등록대행자들이 이용한 구체적인 이전 과정의

공개된 문서에 대해 고지하고 그러한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 이전 권한

기존 등록대행자(Losing Registrar)나 해당 관리기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WHOIS 서비스에 기재된 관리자

연락처(Administrative Contact) 및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는 이전대상

등록대행자로 도메인을 이전하기 위한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당사자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의

권한이 관리자 연락처의 권한에 우선한다.

등록대행자들은 이전 요청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코드

등록대행자(Registrar of Record)나 관련 관리기관으로부터 얻은 또는 합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WHOIS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2. 이전대상 등록대행자 요건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가 도메인이름 등록을 다른 등록대행자로 이전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전대상 등록대행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1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나 관리자 연락처(이하 “이전 연락처”)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이전대상 등록대행자가 이전 연락처로부터 이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1.1 허가는 반드시 유효한 표준 허가서(FOA)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ICANN 웹사이트에서 두 가지 종류의 FOA 를 제공한다. 이전대상 등록대행자는 이전 연락처로부터 등록대행자 이전 허가서를 요청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행자 이전을 위한 초기 허가서(Initial Authorization for Registrar Transfer)”라는 제목의 허가서를 사용해야 한다.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이전 연락처로부터 이전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행자 이전 요청 확인서(Confirmation of Registrar Transfer Request)”라는 제목의 허가서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서는 영어로 작성해 전달해야 하며 이전 요청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영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등록대행자들은 이전 연락처와의 의사소통에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등록대행자가 그러한 선택을 할 경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허가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1.2 이전대상 등록대행자가 물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 허가서를 얻고자 하는 경우, 이전 연락처의 서명이 있고 추가적으로 문제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레코드 등록대행자 WHOIS 결과의 물리적 사본이 첨부된다면 종이 허가서 사본도 충분한 효력을 가진다.

2.1.2.1 이전대상 등록대행자가 물리적 허가 절차를 통해 허가를 얻는 경우,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는 이전 연락처의 신원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를 구하고 해당 증거를 구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전대상 등록대행자는 이전 요청을 하는 실체가 실제로 해당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정되는 물리적 신원 증명 양식은 다음과 같다.

- 공증된 진술서(Notarized statement)
- 유효한 운전면허증
- 여권

-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 군인 신분증
- 주/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출생증명서

2.1.3 이전대상 등록대행자가 전자적 절차를 통해 허가를 구하는 경우, 인정되는 신원 증명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가 소재한 지역의 국가 법률(해당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합하는 전자 서명
- 이전 연락처의 이메일 주소와 일치하는 이메일 주소를 가진 개인 또는 실체의 동의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단지 이전대상 등록대행자가 위에 명시된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대상 등록대행자가 이전 요청에 대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도메인 이전 요청의 진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전대상 등록대행자가 이전 연락처에 의한 이전 요청을 접수하고 진위가 확인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전이 진행되어야 한다.

2.2 등록대행자 툴 키트 (Registrar Tool Kit)에 명시된 “이전” 명령을 전송함으로써 관리기관 운영자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운 등록대행자를 반영해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2.2.1 “이전” 명령을 전송함으로써 권위 있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전 연락처(Transfer Contact)로부터 이전에 꼭 필요한 허가를 획득했다는 이전대상 등록대행자 측의 의사를 표시한다.

2.2.2 등록대행자간 도메인이름 이전을 위한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의 요청을 검증하는 것은 이전대상 등록대행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레코드 등록대행자가 원할 경우 도메인이름을 본 정책 제 3 항에 따라 이전대상 등록대행자로 이전하려는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의 의도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3. 레코드 등록대행자의 의무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관리기관이 보낸 이전 예정 공지를 받은 후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에게 이전 사실에 대해 고지함으로써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의 이전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반드시 이전대상 등록대행자와 관련해 본 계약에 명시된 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레코드 등록대행자가 이용한 요청 양식이 사실상 관리에 도움이 되고 정보를 제공하며 이전 연락처의 의사를 검증할 목적으로 명확하게 이전 연락처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반드시 허가서(FOA)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서(FOA)는 영어로 작성해 전달되어야 하며 이전 요청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영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등록대행자는 이전 연락처와의 의사소통에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등록대행자가 해당 선택을 할 경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허가서(FOA)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처럼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본 정책에 명시된 과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등록대행자는 이전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전 연락처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된 허가서(FOA)에 어떤 추가 정보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 요건으로 인해 레코드 등록대행자가 기존의 고객들을 상대로 별도의 교신을 통해 마케팅 하는 것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에게 운영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허가서(FOA)를 발송해야 하지만 관리기관 운영자로부터 이전 요청서를 받은 후 늦어도 이십사(24) 시간 내에는 반드시 발송해야 한다.

레코드 등록대행자가 이전 요청에 관한 관리기관의 고지에 역일로 오(5) 일 이내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 이전에 대한 디폴트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WHOIS 에 수록된 이전 연락처가 레코드 등록대행자에게 이전 요청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레코드 등록대행자가 명시적으로 이전 요청을 기각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반드시 이전 절차의 진행을 허용해야 한다.

레코드 등록대행자가 다음 중 어떤 이유로든 이전 요청을 기각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와 잠재적 이전대상 등록대행자에게 기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다음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이전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사기의 증거
2. UDRP 에 따른 조치
3. 관할 법원의 법원 명령
4.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 또는 관리자 연락처의 신원에 대한 합당한 분쟁
5. 도메인이름의 등록 만료일이 지난 경우 이전의 등록 기간에 대해 또는 도메인이름 등록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전 또는 현 등록 기간에 대한 비용이 미지급(신용카드 지불 거절 포함) 상태인 경우.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이전 요청을 기각하기 전에 반드시 도메인이름을 “Registrar Hold” 상태로 설정해야 한다.
6. 권한 있는 이전 연락처(Transfer Contact)가 이전에 대해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거부 의사의 표시는 권한 있는 이전 연락처(Transfer Contact)가 특정 이전 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청 형식(종이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을 통해 요청하거나 일시적으로 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등록대행자가 접수한 모든 이전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든 거부의 의사는 반드시 옵트인 방식으로 그리고 권한 있는 이전 연락처(Transfer Contact)의 요청에 따라 권한 있는 이전 연락처(Transfer Contact)의 명시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통해 표현되어야 하고, 등록대행자는 반드시 잠금(보호) 설정을 해제하거나 권한 있는 이전 연락처(Transfer Contact)가 역일로 오(5) 일 이내에 잠금 설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7. 도메인이름에 대한 관리기관 WHOIS 기록에 명시된 생성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전 요청을 하는 경우.
8. 도메인이름 이전 후 60 일(또는 향후 결정될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양측 등록대행자들이 합의하거나 분쟁 해결 판결에 따라 원 등록대행자에게 다시 이전된 경우는 예외). “이전되었다(transferred)” 는 것은 본 정책의 절차에 따라 등록대행자 사이에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등록대행자 변경 요청이 거부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유보된 또는 미래의 등록 기간에 대한 비용이 미지불인 경우
-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나 관리자 연락처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
- 도메인이름이 등록대행자 잠금(보호) 상태(Registrar Lock Status)인 경우. 단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에게 이전 요청 전에 도메인이름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제공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도메인이름을 최초 등록한 후 60 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등록대행자를 변경한 후 60 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외의 도메인이름 등록 기간과 관련한 시간 제한
- 문제의 도메인을 위해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가 등록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등록대행자와 사업 파트너/협력업체 사이의 전체 지불 불이행(General payment defaults)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이전 절차가 아니더라도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 따라서 비용 지불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전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요건의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i) 만료일 후에 이전을 요청한 경우, 이전의 등록 기간에 대한 비용이 미지불 상태일 경우.
- (ii) 만료일 전에 이전을 요청한 경우 현 등록 기간에 대한 비용이 미지불 상태인 경우.

등록대행자 조정

각 등록대행자는 허가서(FOA)와 허가서에 대한 이전 연락처의 응답을 비롯해 분쟁 해결 정책에 따라 분쟁을 제기하고 필요한 근거 문서의 사본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는 반드시 계약서의 표준 문서 보관 정책에 따라 이전 연락처(Transfer Contact)로부터 받은 허가서(FOA)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반드시 믿음만한 신분증 사본을 허가서(FOA)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와 레코드 등록대행자 모두 반드시 등록대행자간 도메인이름 거래 중에 그리고 거래 후에 이전을 위한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 거래의 당사자인 상대의 등록대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ICANN, 등록기관 운영자, 법원 또는 해당 문제의 관할 기관 또는 제 3 의 분쟁 해결 패널 역시 이전 요청이 있을 후 오(5)일 이내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는 반드시 양도 등록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허가서 사본(FOA)를 생성 및 보관해야 한다. 레코드 등록대행자가 허가서(FOA) 사본을 요청한 경우,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는 반드시 레코드 등록대행자의 요청(수반되는 근거 문서 제공 포함)을 역일로 오(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이 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본 정책의 요건에 따라 이전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 운영자나 분쟁 해결 패널이 이전을 취소하는 근거가 된다.

레코드 등록대행자나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가 이전 요청이 본 정책의 조항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고 여길 경우, 등록대행자가 본 정책 C 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

원활한 이전 요청의 처리를 위해서 등록대행자들은 오직 다른 등록대행자들과 관리기관하고만 연락할 수 있는 고유의 전용 이메일 주소를 제공 및 유지해야 한다.

- i. 본 이메일 주소는 이전 요청과 관련된 문제와 본 정책에 규정된 절차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 ii. 본 이메일 주소는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응답할 능력이 있는 인력이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iii. 해당 이메일 주소로 수신된 메시지에는 반드시 합당한 시간 안에 답장을 해야 하며, 수신 후 칠(7)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전에 관한 비상 연락처(Transfer Emergency Action Contact)

등록대행자들은 이전과 관련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전에 관한 비상 연락처("TEAC")를 두어야 할 것이다. TEAC의 목적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등록대행자들 사이에 실시간 대화(양 당사자 모두 이해 가능한 언어로)가 가능하도록 연락하는 것이다. 기존의 (또는 미래의) 이전 분쟁이나 실행 취소 절차를 시작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TEAC를 이용한 연락은 ICANN이 인증한 등록대행자, 일반도메인 관리기관 운영자 및 ICANN 스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TEAC 연락 담당자는 전화번호 또는 다른 실시간 통신 채널로 지정되며 ICANN RADAR 시스템에 기록되어 보호받을 것이다. TEAC 를 이용한 연락은 반드시 무단 도메인 분실 주장이 있을 후 합당한 시간 내에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TEAC 통신 채널로 전송된 메시지에 대해 반드시 기계에 의한 자동화된 응답이 아니라 사람인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의 담당자가 직접 답장을 보내야 한다. 응답을 하는 인력 또는 팀은 반드시 긴급한 이전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할 능력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 최종적인 사건의 해결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응답은 최초 요청이 있을 후 4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TEAC 를 통한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양도 등록대행자는 이 사실을 ICANN 준법 분과(ICANN Compliance)와 관리기관 운영자에게 보고할 것이다. TEAC 를 통한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본 정책 제6 조항에 따라 이전 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고 인가를 갱신하지 않거나 종료하는 등 ICANN 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양쪽 당사자 모두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TEAC 연락과 응답을 보관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ICANN 및 관리 운영자와 공유할 것이다. 이러한 문서는 등록대행자인증계약 (RAA)의 3.4 항에 따라 보관될 것이다. TEAC 통신 채널을 이용했을 때 상대 측 등록대행자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ICANN 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ICANN 은 등록대행자들이 실제로 TEAC 메시지에 응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상황과 방식으로 등록대행자의 TEAC 통신 채널을 주기적으로 시험할 지도 모른다.

“ClientTransferProhibited”상태와 “AuthInfo” 코드 설정을 위한 요건

ICANN 명세서나 정책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등록대행자는 반드시 아래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대행자는 등록할 때 또는 이후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ClientTransferProhibited” 상태를 설정할 수 있지만, 단, 등록대행자가 등록 계약서(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에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포함시킨 경우에 한한다. 또한 등록대행자가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에게 “ClientTransferProhibited” 상태를 해제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의 최초 요청이 있을 후 역일로 오(5)일 이내에 “ClientTransferProhibited”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

등록대행자가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에게 고유 “AuthInfo” 코드를 생성 및 관리하고 “ClientTransferProhibited” 상태를 해제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행자는 반드시 Registered Name Holder 의 최초 요청이 있은 후 역일로 오(5)일 이내에 Registered Name Holder 에게 고유 “AuthInfo” 코드를 부여하고 “ClientTransferProhibited”를 해제해야 한다.

등록대행자들은 “ClientTransferProhibited” 상태를 해제하고 “AuthInfo Code”를 얻기 위한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의 연락처나 네임 서버 정보의 측면들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보다 더 제약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레코드 등록대행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와 관리기관 사이에 비용 지불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ClientTransferProhibited” 상태를 해제하거나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Registered Name Holder)에게 “AuthInfo Code”를 발부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등록대행자가 생성한 “AuthInfo” 코드는 반드시 도메인별로 고유해야 한다.

“AuthInfo” 코드는 반드시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의 신원 식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본 정책 2 항과 4 항에서 설명하듯이 이전 요청의 허가나 확인을 위해서는 여전히 허가서(FOA)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등록기관 요건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로부터 “이전”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 운영자는 양측 등록대행자 모두에게 전자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다. 전자 고지서를 이용하는 관리기관들의 경우 각 등록대행자가 원활한 이전 처리를 목적으로 정한 고유 이메일 주소로 답장을 발송할 것이다.

관리기관 운영자는 관리기관 운영자가 레코드 등록대행자로부터 역일로 오(5)일 이내에 NACK 프로토콜 커맨드(protocol command)를 받지 않는 한 이전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로 이전된 사실을 반영해 업데이트되면 관리기관 운영자는 양측 등록대행자에게 전자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다. 이 고지서는 각 등록대행자가 원활한 이전 진행을 목적으로 생성한 고유 이메일 주소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한 다른 이메일 주소로 발송될 것이다.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 관리기관 운영자가 아래에 명시된 고지서 중 하나를 수신할 경우 관리기관 운영자는 이전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이전은 취소되고 Registrar of Record(레코드 등록대행자) 필드는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관리기관 운영자는, 관리기관 분쟁 판결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고지서를 수령한 후 역일로 오(5)일 이내에 반드시 반드시 이전을 취소해야 한다. 판결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 운영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역일로 십사(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을 취소해야 한다. 이전 취소에 요구되는 고지는 다음과 같다.

- i. 레코드 등록대행자와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가 이메일, 서신 또는 팩스를 통해 전송한, 실수로 이전이 이루어졌거나, 본 정책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서
- ii. 이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분쟁 해결 기구의 최종 판결
- iii. 이전에 대한 관할 법원의 명령
- iv. 레코드 등록대행자가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공한 것으로서,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가 TEAC 를 통한 메시지에 A. 4 항에 규정된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문서

등록 레코드

각 등록대행자는 고객인, 즉 등록된 도메인이름보유자에게 최초 도메인이름 등록일을 문서화하고 입증하기에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등록 기간에 미치는 영향

본 파트 A 에 따라 관리기관 운영자가 보유자가 인가한 이전을 실행하면 기존 등록의 유효 기간이 일년 연장될 것이다. 단 어떤 경우에도 한 도메인 등록의 유효 기간은 총 십(10)년을 넘지 않는다.

ICANN 이 인가한 이전

한 등록대행사가 후원하는 모든 도메인의 스폰서십(sponsorship)을 (i) 다른 등록해당자가 해당 등록대행자나 그 자산을 인수하거나 (ii) 해당 등록대행자에 대한 승인이 없거나 관리기관 운영자의 허가가 없어서 이전할 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한 등록대행자가 관리하는 모든 도메인 등록을, (i) 다른 등록대행자가 그 등록대행자나 자산을 인수하거나 (ii) 그 등록대행자의 인증 결여나 관리기관 운영자의 허가 결여로 인해 이전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a) 이전 대상 등록대행자는 반드시 관리기관 최상위도메인(Registry TLD)에 대해 ICANN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반드시 관리기관 최상위도메인에 대해 관리기관 운영자와 체결한 관리기관-등록대행자 계약서를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

(b) ICANN은 반드시 관리기관 운영자에게 해당 이전이 등록대행자의 실질적 또는 임박한 도산으로 인해 위협을 받을 지도 모를 안정성에 대한 이해 등 커뮤니티의 이해를 진작시킬 것임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위의 두 조건이 충족될 경우, 관리기관 운영자는, 5만개 이하의 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된 이전을 위해 비용 처리 없이 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할 것이다. 이전과 관련된 도메인이름이 5만 건이 넘는 경우, 관리기관 운영자는 이전대상 등록대행자에게 5만 달러를 일시불로 부과할 것이다.

이전 분쟁 해결 기구

등록대행자간 이전과 관련한 분쟁 처리 절차는 이전분쟁해결정책(Transfer Dispute Resolution Policy)의 규정을 따른다. 해당 관리기관 운영자 및 ICANN이 인가한 등록대행자들은 반드시 이 정책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